

#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71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3. 10. 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## 1. 제안이유

시중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저금리 추세가 지속됨에 따라 현행 도시철도공채 발행이율을 현실정에 맞게 인하 하려는 것임.

## 2. 주요골자

도시철도공채의 발행이율을 연 4퍼센트 복리에서 연 2.5퍼센트 복리로 변경함(안 제4조제2항).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도시철도법 제12조, 도시철도법시행령 제10조제2항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(1) 신·구조문 대비표, 별첨

(2) 입법예고(2003.9.19~10.9)결과, 의견없음

(3) 규제심사 : 규제신설·폐지등, 없음

## 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개정조례안

대전광역시도시철도공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중 “연4퍼센트”를 “연2.5퍼센트”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4조(원금상환 및 이자지급) ① (생략)</p> <p>②도시철도공채의 이율은 연 4퍼센트 복리로 한다.</p>	<p>제4조(원금상환 및 이자지급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연 2.5퍼센트-----</p>

## 관 계 법 령

### □ 도시철도법

第12條 (都市鐵道債券의 발행) ①國家·地方自治團體 및 都市鐵道公社는 都市鐵道債券을 발행할 수 있다.

②地方自治團體의 長이 都市鐵道債券의 발행을 위하여 內務部長官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미리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.  
<改正 1991.5.31, 1995.12.29>

③都市鐵道公社가 都市鐵道債券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建設交通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.<改正 1995.12.29>

④都市鐵道債券의 消滅時效는 償還日부터 起算하여 元金은 5年, 利子는 2年으로 한다.

⑤第1項의 規定에 의한 都市鐵道債券은 基本計劃이 확정된 해부터 당해 年度 都市鐵道 運營收入金이 당해年度 都市鐵道 運營費用(元利金 償還額을 포함한다)을 최초로 초과하는 해까지 발행할 수 있다. [全文改正 1990.12.31]

### □ 도시철도법시행령

제10조 (도시철도채권의 발행방법등) ①도시철도채권은 공사채등록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등록하여 발행한다. <개정 1999.5.10>

②도시철도채권의 이율은 국가가 발행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건설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,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때에는 연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며,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때에는 연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관련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도시철도공사의 규칙으로 정한다.  
<개정 1994.12.23, 1999.5.10> [전문개정 1991.7.25]